

**부속서 II**  
**온두라스의 유보목록**

**주해**

1. 이 부속서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온두라스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
가. 제9.3조(내국민 대우) 또는 제10.2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9.4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10.3조(최혜국 대우)

다. 제10.4조(시장접근)

라. 제10.5조(현지주재)

마. 제9.9조(이행요건), 또는

바. 제9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
나. **관련의무**는 제9.13조제2항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제2항(비합치 조치)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,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(들)를 명시한다.

다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
라. **기존의 조치**는, 투명성의 목적상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.

3. 제9.13조제2항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제2항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1. 분야	커뮤니케이션서비스
하위분야	통신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) 시장접근(제10.4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국영통신사[Empresa Hondureña de Telecomunicaciones (HONDUTEL)] 및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소유권 정도를 채택, 유지 또는 수정하는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2. 분야	사회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법의 적용 및 집행과 사회적 재할 서비스,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에서,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연금, 실업보험, 사회 보장 서비스, 연금 기금 서비스, 사회 복지 서비스, 공교육, 공공훈련, 보건 및 보육.
조치	

3. 분야	소수집단에 관한 사항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4. 분야	유통서비스
하위분야	석유제품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원유, 합성유, 정제유 또는 병커유 및 그들의 모든 파생물의 수입 및 도매 유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5. 분야	모든 분야
하위분야	
관련의무	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온두라스는 한국과 관련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조약을 기초로 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온두라스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다음에 관한 모든 국제 조약을 기초로 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가. 항공</p> <p>나. 어업</p> <p>다.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, 또는</p> <p>라. 철도운송</p>
조치	

6. 분야	정부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7. 분야	운송서비스
하위분야	육상 운송 서비스, 여객, 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육상 운송 분야, 여객 또는 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8. 분야	전문직서비스
하위분야	모든 분야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9. 분야	어업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분야 및 어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

10. 분야	도박 및 베팅 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“도박 및 베팅”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
조치	

11. 분야	시청각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 온두라스는 애니메이션, 비디오 게임,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조치	